

인천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50945(본소), 2017나509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C중회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17. 7. 19.

판결 선고 2017. 8. 23.

제 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16782(본 소),
2016가단111210(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는 김포시 N 임야 13,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71. 8. 14. 접수 제4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198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종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1. 2. 20. 접수 제6980호로 마친 공유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종회에 김포시 D 임야 13,901㎡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종회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종회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종회의 반소제기는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 총회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조부 O 소유였다가 원고가 상속받은 것으로, 피고 총회와 무관하다.

나. 판단

1) 반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 판단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참조).

을 제29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총회가 P파 족보에 기초하여 종원의 수를 204명으로 파악하고 그 중 189명에게 우편으로 소집을 통지하였고, 4명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소집통지를 하였으며, 2017. 6. 27.자로 총회소집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고 총회의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위 종원 중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 125명을 포함하여 154명을 출석자로 하여 2017. 7. 9. 피고 총회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반소 제기를 포함한 이 사건 소송행위 전체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총회의 2017. 7. 9.자 임시총회의 소집통지와 결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소송행위 및 반소제기에 관한 사항을 모두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위 결의는 종원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이므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요구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가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 총회의 반소제기가 당초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종회는 Q 10대손인 R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데, P파 세보에서는 S을 1세로 기재하고, R은 11세로 기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묘는 2기로 파악되고, 그 비석에 "T 공인1)U부좌2)지묘", "유인3)V 지묘"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묘 중 "T 공인U부좌 지묘"는 P파 12세손인 W과 그 처인 U의 묘이고, "유인V 지묘"는 같은 파 13세손인 X 및 그 처 Y의 묘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P파 14세손 Z의 차남인 E였고, 위 E는 소화 3년(1928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F 및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런데 위 F은 X의 차남인 14세손 AA의 장손4)으로서 19세손 AB5)이고, 위 G는 앞서 본 E의 차남이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판결'3. 나.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실시한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종회는 이 사건 토지 사정 및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로서의 종중으로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 B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R의 장남인 W과 그 부인, R의 장손으로X와 그 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2 X에게는 장남 AC, 차남 AD, 삼남 Z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E는 Z의 아들 AE의 차남이었다. 그럼에도 E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직후 X의 차남 AD의 장손인 AF 및 자신의 차남 G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각 1/2씩 이전하여 주었다.3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로 등기된 원고는 Z의 장남 O의 자손으로서 장손이고, 피고 B은 AD의 장손이자 AF의 손자로서, 최초 사정명의인인 E와 직계 가족은 아니다.(2) 따라서 피고 종회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반소장 부분이 2016. 8. 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종회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 종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 종회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종회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종석, 판사 신세아

1) 공인(恭人)이라 함은 조선시대에 정오품 및 종오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를 의미한다.

2) 부좌(耐左)라 함은 부부를 합장할 때에 아내를 남편의 왼쪽에 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인(孺人)이라 함은 조선시대 정구품 및 종구품 문무관의 아내인 외명부의 품계 또는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정에 쓰는 존칭을 의미한다.

4) AD의 장남은 AG, 그 장남은 AH, 그 장남은 AI, 그 장남은 AJ이다.

5) P파 세보에는 AF의 이름 옆에 A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망 AF의 처음 이름이 F이었음을 의미한다.